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하반기)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하반기)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3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제도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은 유지하되, 외형·규격 등이 변경된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2) 최초 지정된 중기부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

□ 제외대상

-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②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③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 ④ 신청제품과 기존 R&D수행과제 간 연관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 공공성평가 또는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8. 13(화) ~ 9. 4(수),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①나라장터 등록안내
등록방법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 ○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 ※ 동 공고 별첨 1~3 자료 참조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
참고	○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교육영상 : https://www.g2b.go.kr:8053/board/boardView.do?bltnsNo=5535&bbsNo=PB002

구 분	②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 www.smt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접수 매뉴얼	○ www.smt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문의처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tech.go.kr 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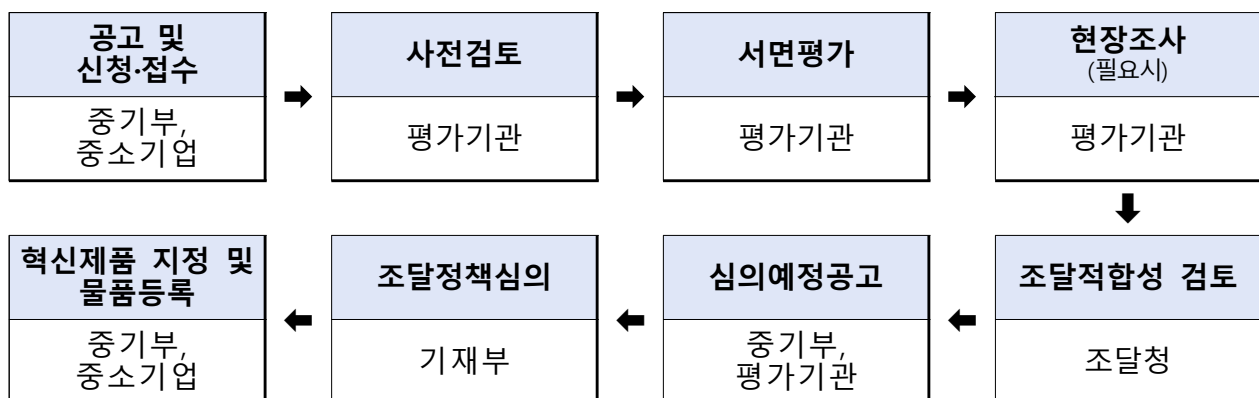
-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 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 ⑨, ⑩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 ③~⑧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②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③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 세부 신청서	서식1	필수
④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용)	서식2-1	필수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용)	서식2-2	
⑤	자기점검표	서식3	필수
⑥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서식4	필수
⑦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서식5	필수
⑧	규격추가 혁신제품 개요	서식6	필수
⑨	기타 추가등록을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해당시
⑩	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	필수 또는 해당시

4.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지정절차



* 추진주체 : (신청기업) 중소기업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필요시 서면평가 이후 현장실태조사 가능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9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서면평가 (10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성능·기술의 유지 또는 동일 여부 등 적정성 검토

③ 조달적합성 검토 (10월)

- 법정인증, 규격, 법적 안전성,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조달대상 적합여부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11~12월)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20일 이상 공고
* 이의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여부 결정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2월)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지원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추가등록 지정대상 최종확정

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12월)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최초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12월)

- 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을 통해 물품등록 신청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별첨1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등록)

별첨2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등록)

별첨3 :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